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20조제4항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거점기관”을 약칭하여 규정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거점기관”을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 거점기관 또는 진흥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u>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u> <u>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u> <u>지원하기 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④ 특별시장·통합	

	<u>는 진흥기관과 협</u> <u>력하여 추진할 수</u> <u>있다.</u>	----- -.
--	--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54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김승수 · 안철수 · 이현승
조승환 · 고동진 · 김미애
추경호 · 서지영 · 박정하
이종욱 · 김예지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거점기관”을 약칭하여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흥기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0조제5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창작·제작 시설,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을 거점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 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1. 교육훈련 실시</u> <u>2. 일자리 연계 지원</u> <u>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 공</u> <u>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 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 <u>④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 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u>
<u><신 설></u>	

<u><신 설></u>	<u>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u>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제작 시설,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u>
---------------------------	---